

(환경청 고시 제 85-9 호, '85.8.27)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1. 목 적

현행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의 종류중에서 타법령에서 원료나 재료물질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산업폐기물을 그 법령에 의한 허가받는 사업자나 공업배치법등에 의한 공장등록을 필한 사업자에게 제품 생산을 위하여 산업폐기물이 유상으로 매입되어 활용될시에는 환경보전법 제 50 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없이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이용자의 범위 (산업폐기물처리업허가 제외대상)

산업폐기물처리업 업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산업폐기물 및 그 이용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환경청고시제 85-9호)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6 조 별표 5 에 의한 산업폐기물로서 환경보전법 제 50 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없이 원료나 재료로서 유상공급되어 이용할 수 있는 산업폐기물 및 그 이용자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 년 8 월 27 일

환 경 청 장

1. 사료관리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 제조업자에게 동·식물성 고품질 잔재물이 공급되는 경우
2. 비료관리법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자에게 동물의 분뇨 또는 사채류와 오니류가 공급되는 경우
3. 주택건설촉진법 제 41 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 생산업자에게 광재 또는 연소재가 공급되는 경우
4. 도로운송차량법 제 77 조의 17 의 규정에 의한 폐차 사업자에게 폐차자동차가 공급되는 경우
5.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독·극물제조업자 (소분업자제외) 에게 폐용제류 또는 폐산·폐알카리가 공급되는 경우
6. 석유사업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에게 폐유허유계와 폐광물유계가 공급되는 경우, 다만, 석유정제업 신고자는 공업배치법 시·도 조례 (예규 포함) 에 의거 공장설치의 신고자나 공장설치의 허가받은자 또는 공장등록을 한자로서 환경보전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자에 한함.
7. 합성수지 폐기물처리사업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폐합성수지, 폐지류가 공급되는 경우
8. 공업배치법 또는 시·도 조례 (예규 포함) 에 의한 공장설치의 신고자나 공장설치의 허가를 받은자 또는 공장등록을 한자로서 환경보전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에게 산업폐기물이 공급되는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3.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대 상	조 치 사 항	비 고
가. 환경오염 중 양지도 점검반 및 시·도	1)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 제외대상 범위 홍보 및 재활용 유도 2) 산업폐기물 배출업소 - 적정처리 여부 확인 - 운반신고 및 종말처리신고 이행여부 - 산업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여부 - 허가제의 대상자 (환경청고시제 85-9호) 에게 공급시 적격 여부 - 종말처리장 (매립시설) 의 확보 여부 3) 산업폐기물 처리업소 - 수탁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 소각로등 주요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 매립시설의 확보 여부 - 운반신고 및 종말처리 신고 이행 여부	
나. 시·도	1)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 제외대상 범위 홍보 2) 산업폐기물 배출업소 및 산업폐기물 처리업소의 운반신고와 종말처리신고 수리 3)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승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승인 4) 산업폐기물 투기예방 및 투기 산업폐기물의 제거 명령 5) 산업폐기물 부적정 처리자에 대한 고발 조치 6) 산업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7 조 제 23호서식) 에는 “㉔ - 4 재활용” 란에 기입토록 지도	
다. 배출업소	1)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 2) 산업폐기물 종말처리 시설 (매립지) 확보 3) 산업폐기물 위탁처리시 반드시 산업폐기물 처리업허가자에게 위탁 4)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 제외대상자 (환경청고시제 85-9 호 해당자) 에게 공급시는 근거 서류 비치 및 대상자가 원치않는 산업폐기물 끼워 공급 금지 5) 환경보전법 제 52 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산업폐기물운반신고 및 종말처리신고를 필할것 (산업폐기물 처리업자나 처리업이 필요없는 자에게 공급시에도 운반신고 대상임)	서식별첨 별지 25호 서식

대 상	대 상 기 간	비 고
	6) 유상공급산업폐기물에 대하여는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실적보고서(서식 제23호)에는 자가처리항의 “㉔ - 4 재활용”란에 기입함.	
라. 산업폐기물 처리업소	1) 수탁 폐기물의 적정처리 2) 산업폐기물 종말처리시설(매립지) 확보 3) 각종 신고사항의 이행 4) 산업폐기물처리업(재생처리업) 허가증이 필요없다고 판단될시 허가증 반납 5) 수탁받은 산업폐기물을 단순히 물질별로 선별하여 실수요자(환경청고시제 85-9호 해당자)에게 공급하여 산업폐기물 재활용 제고 및 증빙서 비치 6) 산업폐기물을 실수요자에 공급한 량에 대하여는 처리실적보고서(서식제 24호)에는 ㉔항의 “재생량”란에 기입	서식별첨 서식별첨
마. 산업폐기물 재이용자 (환경청고시제 85-9호 해당자)	1) 산업폐기물로 제품생산후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위탁 또는 자체처리) 2) 산업폐기물 매입시에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받을 필요가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를 산업폐기물을 공급해주는 배출업자에게 제공 3) 산업폐기물을 이용·가공하여 제품생산시에는 제3자에게 위탁(하청) 금지(제품생산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로 인하여 산업폐기물 배출업자로 간주되며 상기 “다”항의 대상임)	

4. 산업폐기물별 이용자의 범위 예시

- 다음의 법령에 의거 공장 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산업폐기물이 유상 매입되어 원료나 재료등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산업폐기물 재생처리업 허가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산업폐기물 (규칙 제6조)	재 생 처 리 업 제 외 대 상	비 고
동·식물성 고품잔재물 : 식료품제조 및 향료제조에 관계되는 것에 한한다.	1) 사료관리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 제조업등록자에게 그 사료 제조를 위하여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산업폐기물 (규칙 제6조)	재 생 처 리 업 제 외 대 상		비 고
단미사료의 범위			
구분	세 분	품 명	
식 물	곡물 및 동부산물 박 류	옥수수, 옥수수가공부산물 맥류, 맥류가공부산물, 수수, 귀리, 호 밀, 미곡가공부산물, 탈지강, 대구, 대두부산물, 전분, 루우핀종실 대두박, 임자박, 유채박	
	근괴류(根塊類) 농수산부산물 식품가공부산물 섬유질류 제약부산물	고추씨박, 낙화생박, 호마박, 면실 박, 아마박, 옥수수글루텐, 밀글루 텐, 해바라기박, 주정박, 옥수수배 아박, 맥 아박, 장유박, 맥주박, 야자박, 전분박, 두부박, 커피박 고구마, 타피오카, 감자, 비트 콩각지, 양잠부산물 제빵, 제과, 제면부산물 녹사료 및 목건초, 다만, 화학처리나 미생물 처리를 한것을 제외한다.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제약부산 물	
동 물 성	단백질류	어분 어류의 가공품 및 동부산물, 오모분, 육분, 육골분, 혈분, 피혁 가공분말, 잠용박, 우지, 돈지, 번 데기, 낙농가공부산물, 새우분, 계 분, 골뱅이분	
광 물 성	무기물류 인 및 칼슘류	꿀분, 폐분 탄산칼슘, 석회석, 인, 인산칼슘제, 식염, 황산칼슘	
보조사료의 범위			
	구 분	품 명	
	향 미 제 요 소 제 규 산 염 제	향미제 요소재제, 대용단백 조라이트, 벤토나이트, 카오린	

산업폐기물 (규칙 제6조)	재 생 처 리 업 제 외 대 상	비 고
	<p>2)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유기질 비료의 생산업자에게 그 비료제조를 위하여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유기질 비료명</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박 (어분포함) - 골분 - 잠용유박 - 대두박 - 채종유박, 면실유박, 깨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기타 초목성 식물유박 - 혼합유박 - 미강유박 - 계분 가공비료 - 아미노산 발효 부산비료 (박) - 혼합유기질 비료 - 증제 피혁분 </div>	
<p>동물의 분뇨 및 사채류 : 법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배출 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축산업에 관계되는 것에 한한다.</p>	<p>1)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의 유기질비료중 계분가공비료와 “별표2”의 부산물 비료생산업자에게 그 비료제조를 위하여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부산물 비료명</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비 - 구비 - 분뇨잔사 - 건조축산 폐기물 - 부숙왕겨 및 톱밥 - 건 계분 - 부엽토 </div>	
<p>오니류 :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기성 및 무기성 오니와 준설작업에 발생</p>	<p>1) 비료관리법 제11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자에게 그 비료 제조를 위하여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p> <p>가. 석회비료</p>	

산업폐기물 (규칙 제6조)	재 생 처 리 업 제 외 대 상		비 고
하는 오니에 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석회 - 소석회 - 부산소석회 - 석회석분말 - 부산 석회분말 나. 규산질 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산질 비료 - 규회석 비료 - 소성규산 석회비료 다. 고토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산 고토비료 라. 붕소질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산비료 - 붕사비료 마. 황산 아연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산아연 		
광재 및 연소재 : 광산의 광재는 약 품 선광처리후 배 출되는 불용광석에 한한다.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별표7)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 생산 사업자에게 그 주택자재 생산을 위하여 재료로 공급되는 경우 주택자재의 등록 목록		
	품 목	품 명	비 고
	벽 돌	소성벽돌 시멘트벽돌 고압벽돌 토공벽돌 연탄재벽돌	원료 및 제작방법에 관계없이 각종품명을 포함한다.
	블 록	소성블록 시멘트블록 고압블록 토공블록 연탄재블록	
	기 와	시멘트 기와 토공기와 연탄재기와	

산업폐기물 (규칙 제 6 조)	재 생 처 리 업 제 외 대 상	비 고
	스테트기와 창호및 목재창호 및 틀 틀 콘크리트창호 및 틀 알루미늄창호 및 틀 철제창소 및 틀 합성수지창호 및 틀 조립식 콘크리트부재: 벽판 철판부재: 벽판, 바닥판, 지 붕판, 보, 계단 및 문틀 목재부재: 벽판, 바닥판, 지 붕판, 기둥, 보, 계단 및 문 틀	
폐자동차	가) 폐자동차를 도로운송차량법 제 77 조의 규정에 의한 폐차 사업 허가자가 폐차 처분하는 경우	
폐용제류	가) 석유사업법 제 4 조 규정에 의한 정유정제업 허가를 받은 자 (단, 동법시행령 제 5 조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으로 신고를 필한자는 제외한다) 에게 석유제품제조를 위하여 공급되는 경우	
폐산, 폐알카리 폐용제류	가)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독극물 제조업 등록자에게 그 독·극물 제조를 위하여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다음, 독·극물 소분업자는 제외	
폐광물유계 폐윤활유계	가) 석유사업법 제 4 조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급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으로 신고를 필한자는 공업배치법이나 시·도 조례 (예규포함) 에 의거 공장등록을 필하고 환경보전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은 자에 국한함.	
폐합성수지류 폐지류	가) 합성수지 폐기물 처리사업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에게 공급되는 경우	
기타 산업폐기물 (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제 6 조 별표 5 의 산업폐기물을 말한다)	가) 공업배치법 규정이나 시·도 조례 (예규 포함) 에 의거 공장등록을 필하고 환경보전법 제 15 조 규정에 의한 배출 시설 설치 허가자에게 제품 생산을 위하여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다만, 제품생산에 필요한 연료와 직접관련이 없고 단순히 연료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되는 것은 불가하다.	

◎ 환경청고시제 85-10 호

환경보전법 제 15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방지시설 설계,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보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년 9월 11일

환 경 청 장

자가방지시설 설계 시공을 위한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보유기준

종 류	기 술 능 력	시 설 및 장 비		비 고
		실험기기및장비	실험실	
1. 대기 오염방 지시설	1. 환경관리 기술사 (대관리), 화공기술사 (화학장치 및 설비 화학공장 설계분야) 또는 기계 기술사 (기계공작 및 공장기계, 유체기계, 기계공정 설계분야) 1 인 이상 2. 환경기사 1 급 (대기) 또는 화공기사 1 급 (화공, 공업화학 분야) 1 인 이상 3. 기계기사 1 급 (일반, 정밀, 건설, 공정설계분야) 1 인 이상 4. 전기기사 1 급 또는 전기공 사 기사 1 급 1 인 이상	1.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기체유량 (2) 기체유속 (3) 고온온도 (4) 수 분 2. 다음 항목중 설치시 설에서 배출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매 연 (2) 분 진 (3) 아황산가스 (4) 일산화탄소 (5) 질소산화물 (6) 특정유해물질 3. 제도설비 1 조 이상	40 m ²	제도설비를 제외한시 설 및 장비는 환경청 장이 인정하는 연구 기관 및 해당분야 자 가측정대행업자와의 시설 설치에 따른 측 정대행계약으로 대체 할 수 있다.
2. 수질 오염방 지시설	1. 환경관리기술사 (수질관리) 또는 토목기술사 (상하수도) 1 인 이상 2. 환경기사 1 급 (수질) 또는 화공기사 1 급 (화공, 공업화학 분야) 1 인 이상 3. 기계기사 1 급 (일반, 정밀, 건설, 공정, 설계분야) 1 인 이 상 4. 토목기사 1 급 1 인 이상	1.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PPH (2) BOD (3) COD (4) SS 2. 다음 항목중 설치시 설에서 배출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특정유해물질 (2) N-Hexane 추출물질 3. 제도설비 1 조 이상	40 m ²	제도설비를 제외한 시 설 및 장비는 환경청 장이 인정하는 연구기 관 및 해당분야 자가 측정대행업자와의 시 설 설치에 따른 측정 대행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

종 류	기 술 능 력	시 설 및 장 비		비 고
		실험기기및장비	실험실	
3. 소음 진동방 지시설	1. 환경관리기술사 (소음·진동) 또는 기계기술사 (기계공장 및 공작기계 기계공정설계분야) 1 인이상 2. 환경기사 1 급 (소음·진동) 또는 토목기사 1 급 1 인이상 3. 건축기사 1 급 1 인이상	1.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소 음 (2) 음대역 2. 제도설비 1 조이상	40 m ²	제도설비를 제외한 시 설 및 장비는 환경청 장이 인정하는 연구기 관 및 해당분야 자가 측정대행자와의 시설 설치에 따른 측정대행 계약으로 대체할 수있 다.

- (註) 1.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전문기술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표의 기술사와 대체할 수 있다.
2. 기술능력중 기사 1급 소지자는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3. 대기, 소음, 진동 및 수질방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 공통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을 일괄하여 시행할 경우 또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시행
할 경우에도 적용기준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1985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보전협회보는 환경인 여러분의 글로 이루어집니다.”

環境保全協會報는 環境人 여러분이 꾸미는 글모음입니다.

각 회원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연구개발현황, 공지사항 그리고

제언이나 시·수필 등을 수시로 본 협회 홍보부로 투고바랍니다. 더불어 환경기사,
본 협회 명예회원 등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이의 글이면 어느 글이나 환영합니다. 간혹,
지면관계로 당해호에 실리지 못한다면 차호에 꼭 게재하여 드리오니 環境人 여러분의
많은 투고바랍니다. ※ 게재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지불하며 보내신
원고는 반환치 않습니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 홍보부